

[] 휴업
[√] 폐업 신고서

접수일		처리기간	즉시
사업자	상호(법인명):	사업자등록번호:	
	성명(대표자):	전화번호:	
	사업장 소재지:		

신고내용	휴업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일간)
	폐업일	201년 월 일

휴업·폐업사유	사업부진	행정처분	계절사업	법인전환	면세포기
	1	2	3	4	5
	면세적용	해산(합병)	양도·양수	기타	
	6	7	8√	9	

양도 내용 (포괄양도·양수의 경우만 적음)	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(또는 주민등록번호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·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

대리인 인적 사항	성명	주민등록번호	전화번호	신청인과의 관계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([]휴업, [√]폐업)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201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사업자등록증 원본(폐업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양도·양수계약서 사본(포괄 양도·양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및 유의사항

※ 참고사항

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·등록·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(예: 폐업신고서)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 줍니다.

※ 유의사항

-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,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·납부를 하여야 합니다.
-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·납부를 하여야 합니다.